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경도(문주명)

나. 전화번호 : 02-2050-4244

2. 명칭 : 전진식 지지대와 신장폴리를 이용한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에 의한 정위치에서의 암반절단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굴착

<기술의 요지>

무진동 암반굴착 작업의 경우 굴착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자유면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본 신기술은 노출면 (제1자유면)에 직각 방향으로 2개의 평행한 진입공(제2자유면)을 설치하고 그 내부로 와이어쏘가 장착된 지지대를 밀어 넣으면서 (전진식) 와이어쏘를 가동하여 소음과 진동,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하여 암반을 절단하는 친환경적인 절단 기술공법이다. 기존 기술은 암반절단이 진행됨에 따라 장비가 후방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신청기술은 장비를 고정(정위치) 시킨 후 신장폴리를 조정함으로써 와이어쏘 길이조절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범위>

발파진동 감소 및 암굴착시 암파쇄 능률 향상을 위한 제 2자유면을 설치함에 있어서, 양쪽 지지대 상에 다이아몬드 와이어쏘를 거치한 지지대를 전진시킴으로서, 정위치에서 깊은 심도까지 암반을 절단하여 자유면을 설치하는 방법 및 구동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은 암반절단 장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9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윤창이엔씨(강인동)

나. 전화번호 : ① 032-679-9623

2. 명칭 : 원격제어 및 측구부 적용이 가능한 상하 유압식 개량 다짐기를 사용하여 성능 회복 개질형 초속경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교면 포장 보수 공법(RHS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원격제어 및 측구부 적용이 가능한 상하 유압식 다짐기와 개량 진동모바일 믹서, 측면 파쇄기를 사용하여 성능 회복형 초속경화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교면 포장 보수 공법이다. 특히 개량된 상하 유압식 다짐기는 원격제어에 의하여 두께를 조정하고 측구부 적용이 가능함으로 작업의 시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실리카, 메타카올린, 개질폴리머를 혼입한 균열부에 대한 성능 회복기능을 가지는 개량 초속경 폴리머 시멘트를 적용함으로 품질확보에 의한 내구성과 안정적 성능을 실현하였다

<범위>

신청기술은 원격제어 및 측구부 적용이 가능한 개량형 상하 유압식 다짐기를 사용하여 성능 회복기능을 가지는 알에이치에스 초속경 시멘트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교면 포장 보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0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